

	연구관련 포상 규정		문서번호	3-2-32	
			제정일	2013. 03. 01.	
			개정일	2020. 11. 01.	
			페이지	1/3	관리 부서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재직 교수를 대상으로 학문적 업적의 우수성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포상하고자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① 수상 후보자는 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으로 교원업적평가결과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.

제3조(실적) ① 보상을 위한 공적 자료는 본 대학 재직 중 매 학년말 연구실적물로서 학술 연구 논문 등의 실적으로 한다.

② 인정 실적 범위

가. SCI급 전문학술지 [SSCI, AHCI, SCI(E), SCOPUS] 논문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
나. KCI 학술지 논문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

제4조(포상 부분) 포상부분 및 포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.

- ① SCI급 전문학술지 우수 논문의 포상 대상 및 방법은 총장이 결정한다.
- ② KCI급 학술지 이상의 논문은 연구보조비(논문게재료)를 지급한다.

제5조(신청) 연구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년 2월에 교무처에 신청서를 제출한다

- 가. 연구보상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- 나. 연구논문 별쇄본 혹은 증빙가능한 자료

제6조(보상) 포상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

제7조(시기) 포상은 매 학년 초에 시행한다.

제8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연구관련 보상 규정	문서번호		3-2-32	
		제정일		2013. 03. 11.	
		개정일		2017. 06. 20.	
		페이지	2/3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